

인천지방법원 2020. 8. 19 선고 2020가단653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8. 19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6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84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. 3. 19.부터 2020. 6. 12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3. 일부 기각 부분

원고는 망 D의 자녀로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8,400만 원을 각자 지급할 것을 구하나, 상속채무는 분할채무이므로 피고별로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4,200만 원(= 8,400만 원 × 1/2)의 지급을 명하고,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최고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며, 위 각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판사강인혜

별지